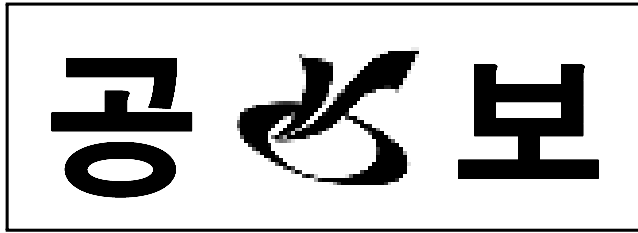


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

선 람	기관의 장

제580호

2007년 5월 28일 월요일

차 례

고 시
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24호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업 설치허가
 기준고시 2
- 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25호 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 : 백석지구소 3-1호선일원 외
 1개노선)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4

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481호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
 시행규칙(안) 입법예고 12
- 인천광역시서구공고 제2007-483호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적자원관리센터 설치 및
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(안) 입법예고 21

회 람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서구

편집 : 문화공보과

고 시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24호

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업 설치허가기준고시

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4조제4항, 동법 시행령 제3조제5항과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및사업법제3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판매업의 설치허가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2007년 5월 22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고압가스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의 설치허가기준을 규정함으로써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로 인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공의 안전과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허가기준)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업 허가기준은 다음과 같다.

1. 허가지역

- 가.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의 판매업 허가는 전용·준공업 지역에 한한다. 다만, 기존 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에 편입될 시에는 녹지·관리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다.
- 나. 건축법,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, 학교보건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어야 한다.

2. 안전거리

- 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은 그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[별표4] 제1호가목에서 정한 거리의 2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.

3. 시설기준

- 가.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는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용기보관실 38㎡이상, 사무실 18㎡, 주차면적 23㎡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(단, 기존업소가 공공사업시행지구내로 편입될 시에는 도로폭 4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이전할 수 있다)
- 나. 고압가스 판매업소는 도로폭 8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부지로 용기보관실은 산소·독성가스 또는 가연성가스를 보관하는 경우 각 고압가스별로 20㎡이상, 사무실은 18㎡ 이상, 주차면적은 23㎡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.

다. 판매업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규정된 1종 보호시설을 포함한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다.

라.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 변경하여야 한다.

제3조(판매 및 취급금지)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판매업자는 허가받은 가스 이외에는 판매 및 취급 할 수 없다.

제4조(위해방지등) 고압·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요건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.

제5조(적용범위) 이 고시는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. 다만, 동일부지 에서 안전관리 강화등의 목적으로 저장설비를 변경하거나, 고압가스 품목 추가(가연성·독성은 제외) 등으로 변경허가 할 때에는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1. 시행일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

2. 시설기준등에 대한 경과조치

이 고시 이전에 허가를 받은 업소는 이 고시에 의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

3. 폐 지

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고시제2007-07호(2007.01.30)는 폐지한다.

인천광역시서구고시 제2007-25호

인천도시계획시설(도로:백석지구소3-1호선일원 외 1개노선)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

인천광역시 서구 도시계획시설 [도로명:백석지구 소3-1호선일원 (사업명:백석지구 소3-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), 도로명:독가촌지구 소3-1호선(사업명: 독가촌지구 소3-1호선 도로개설공사)] 에 대하여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관한법률 제88조 및 동법률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서구청 도시개발과(☎560-4760)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.

2007년 5월 22일

인천광역시서구청장

1. 고시내용

가. 백석지구 소3-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

구 분	백석지구 소3-1호선일원 도로개설공사	비 고
사업의 시행지	○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22-10번지일원	
사업의 종류 및 규모	○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○ 명 칭 : 소로 1류 1호선 및 4호선 ○ 규 모 : L=220m, B=6m, A=1,320㎡ L= 90m, B=4m, A = 360㎡	
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	○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○ 성 명 : 인천광역시서구청장	
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	○ 착공예정일 : 2007.06 ○ 준공예정일 : 2007.12.	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	“별첨 참조”	
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 및 지장물 조서	“별첨 참조”	

나. 독가촌지구 소3-1호선 도로개설공사

구 분	독가촌지구 소3-1호선 도로개설공사	비 고
사업의 시행지	○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동 산10-12번지일원	
사업의 종류 및 규모	○ 종 류 : 도시계획시설(도로) ○ 명 칭 : 소로 1류 1호선 ○ 규 모 : L=220m, B=6m, A=1,320㎡	
사업 시행자 주소 및 성명	○ 주 소 :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동 244 ○ 성 명 : 인천광역시서구청장	
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	○ 착공예정일 : 2007. 6 ○ 준공예정일 : 2007.12.	
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	“별첨 참조”	
사용 또는 수용할 건물 및 지장물 조서	“별첨 참조”	

공 회 공 시

민천광역시서구 3-1호신 도3계연공시

구	구	구	구	구	구	구			구	구
						구	구	구		
1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
2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
3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
4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
5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
6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
7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
8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	구

